

시장질문(보충)답변서

김관수 의원님이 “부천시장이 공식석상에서나 사석에서 또는 간담회 등 모임에서 의회를 수차례 비방했다. 의회와 시민들 앞에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의 권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의 결정이 완벽하다”는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정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법적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정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치 못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현대행정의 행태입니다.

○ 이때 시장으로서 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추진할 것이냐의 결정은 시장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결정은 시장으로서의 리더십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홍건표 시장의 경우 시정의 중요한 정책인 경우 재추진하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대의회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시장이 직접 상임위에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 또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공표하고 의회와 대시민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 시민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시정의 추진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시장은 시민이 선택한 부천시의 가장 큰 머슴입니다. 머슴이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주인에게 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인 시민들이 시민의 숙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시정 중요정책의 진행상황 등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시민에게 시정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공표한 내용이 모두 왜곡되거나 허위날조가 없는 부천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 그 대표적인 정책이

- (1) 쓰레기MBT사업 : 3회 부결, 4회째 승인됐고
- (2) 08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 여러 번 부결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년 당초예산 100% 삭감, 1차 추경에 20억 원 반영.
- (3) 무형문화공방거리사업 : 당초 100% 삭감, 1회 추경에 국비 포함 11억 원만 계상하고 2차 추경 38억 원 전액 삭감.
- (4)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각 : 3회째 부결 등 시 주요정책이 의회의 결정으로 진행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적 내용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의회에서 부결되고 있는 중요정책은 부천시 미래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의회를 비방했는지, 의회가 시정을 통제한다는 법적 정치적 논리로 발목을 잡았는지는 언젠가는 자명하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은 시정의 주요정책에 관한한 그 어떤 정치적 타협 없이 추진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토록 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을 사실대로 공표한 것에 대하여 비방이라는 제명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시정에 있어 시장의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 사실을 사실대로 시민에게 공표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운운하며 공갈 협박하는 행태에 대하여도 엄중 대처하여 시장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공표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법적 저촉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홍건포 시장에 대한 사과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55쪽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결의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박두레 상임이사 해임요구안에 대하여는 현재 사법기관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여부에 대한 사법적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박두레 상임이사 해임결의안이 부천시의회 100% 결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정이 완벽하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최종적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범죄로 추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두레 상임이사에 대한 문제도 아직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증을 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의회의 결의대로 박두레 상임이사를 해임한 후 법적으로 무혐의가 됐을 경우 과연 부천시의회가 박두레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과 명예에 대한 법적, 재정적, 심적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며 책임질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책임도 못 지고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으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은 분명한 의회의 권력남용이라고 판단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또 시의회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엄청난 책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용납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상입니다.(저는 한 정치인으로 이런 현상을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책집행자로서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장 외에 모든 정치권의 결정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책임 없는 조언에 불과합니다.

행정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행정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이라 해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분명한 구분에 의한 시장의 고뇌에 찬 신성한 결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유언비어, 허위날조, 흑색선전, 왜곡보도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만연돼 있습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사건이 큰 교훈입니다.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는 잃을 뻔 했습니다.

○ 부천에서는 저 본인이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저의 시장임기 6년 동안 흥건포 시장 “6,000만 원 먹었다.”, “항응을 받았다.”, “특혜의혹이 있다.”는 등 수많은 유언비어, 왜곡보도, 정치적 공세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청렴위에 고발하고, 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 정치공세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국가청렴위의 조사도 받고...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홍 시장의 깨끗함만 입증된 것입니다.

- 저는 부천시장으로서 사실무근인 마녀사냥식 정치공세로부터 단호히 대처하여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받는 개인에 대해서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천시 내에서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홍건표 시장의 정치철학입니다.

- 또한 법적 범죄가 있다면 이 또한 단호히 처벌하여 신상필벌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답변서

<총무국>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관내학생들의 어학교육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시립국제교육원 개설에 대한 견해는?
- 교육지원과를 시 본청에 신설할 용의는?

(답 변)

- 관내학생들의 어학교육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시립국제교육원 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내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립 국제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됨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서울 강남구의 경우를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강남구는 구(舊) 청사를 활용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초기설립 비용이 약 25억원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연간 약 18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러나 우리시에서 국제교육원을 설치하려면 공간 확보는 물론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추가 소요될 것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금년에도 영어체험센터 설치, 원어민 보조교사의 모든 초·중·고 지원 등과 어학실 설치 등에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월택지지구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어고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시립 국제교육원 설립은 원어민 교사 활용과 외국어고 유치

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 시 본청에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동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제4항의 기준에 의하여 6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날로 증가하는 학교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09년 9월 학교지원팀을 신설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가칭 학교지원과 등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부천시와 경계지역의 자치단체와 시 차원의 의사타진과 통합제안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향은?
- 자율통합에 관한 시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답 변)

- 이번 자율통합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들이 연명으로 신청하거나 시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시의회가 모두 통합찬성을 의결할 경우 주민투표도 생략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 지난 9월 30일 까지 전국에 33개 시·군이 통합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도 15개 시·군이 통합을 신청하였고 그 중 7개 시에서는 의회에서 신청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다수가 상대시와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신청이었고 주민여론을 통합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내부분열과 상대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시가 상대시의 동의 없이 단독 건의하는 것은 주민혼란과 상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구역개편 법안이 결정될 경우 향후 실질적인 통합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님
- 우리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통합은 우리 모두의 바램 일 것임. 그러나 자치단체간 통합은 어느 일방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까지는 상대지역의 동의와 주민투표로 가결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통합성사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
-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와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래에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공청회 개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상대 시에 통합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질문의원 : 정영태 의원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 구청에 사무위임된 업무를 시본청으로 통합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답 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는 2004년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시군으로 지방이양 되어 본청 및 3개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사용전 검사 373건, 설계검토협의 499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시민들의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 본청에 사용전검사 전담팀 구성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구청 통신전산팀의 통신직 정원은 각각 2명으로 이를 본청으로 정원조정을 통하여 사용전 검사업무를 조정할 경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네트워크, 전화회선, 컴퓨터 관리 등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총 정원 동결로 인하여 정원을 증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2010년 상반기 중 직무분석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임
- 또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제도마련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시민휴양소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연 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통해 가족간의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초구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민휴양소 조성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답 변)

- 현재 시민휴양소를 관외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파악 해 본 결과 서초구, 동대문구가 주민복지를 위한 시민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음
-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도시생활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처 제공은 시민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음
- 우리시는 원미구 춘의동 357번지에 90억을 투입하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2006년도부터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자연 체험학습을 위한 수련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시민휴양소는 지리적여건, 주변 자연환경, 시민 활용도, 투자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지 물색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시민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시민휴양소 조성문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 조례개정이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방안은 ?

(답 변)

- 2008년 중앙 및 경기도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102개 위원회중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 50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중에 있으며, 그동안 24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 완료하여 현재 78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음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의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 하나의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정비한다면 쉽게 위원회를 정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 조례 개정은 개정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의 개정에 한해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 사항으로, 위원회 통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개별 조례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닌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됨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그동안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9. 10. 1.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당초 목표한 정비 대상 50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박종국 의원

- 부천시소사보건소장을 임용하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해 보건소에서 최근 5년간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근거는 ?

(답 변)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보건소장의 자격 즉,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 의원님 의견과 같이 보건소에서 최근 5년 동안 계속 근무한 자로 해석하여 왔으나, 제145회 정례회에서 질의하신 이후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등을 확인한 결과
- “보건소장의 자격은 당해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 즉 보건소 또는 자치단체 본청 보건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무직군(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직군으로 현재는 행정과 기술직군으로만 구분함) 직렬의 공무원을 의미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따라서 부천시소사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에 최근 5년 이상 근무한자로 임용하였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
 - 불가능한 외국어고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
 - 면적 부족으로 부적합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와 일반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
 - 경기예고 부지를 시가 제공했다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지적받은 과거일도 있는데 다시 외국어고 부지를 전액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 변)

- 외국어고등학교 추가설립은 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천시에는 특목고가 없어 매년 200~300여명의 우수인재가 외부 특목고로 진학하고 있어 심각한 인재유출 및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제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과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인재교육의 산실이 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유치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과 학부모께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설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 다음 외국어고 정책 자체가 실패로 평가받는 시점에서 거꾸로 외국어고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부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미 2002년 10월부터 여월정수장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전국단위 모집의 특목고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안으로 기존 사립고인 정명여자정보산업고를 특목고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2004. 7월 학교 사

정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계획이 중단된바 있음

- 특목고 설립을 재추진하게 된 계기는 2005. 11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외국어고가 포함된 특수목적고 10개교 확대 설립 계획 발표와 여월택지지구내 2개 일반고가 예산부족 및 저출산 영향으로 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여월택지지구에 특목고를 설립하고자 2006년 4월 특목고 설립 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하고 7월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교설립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며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 정명고에서 다시 특목고 전환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06년 8월 경기도교육청에 여월택지지구 내 신규 유치를 철회하고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요청한바 있음
- 기존 사립고(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은 기숙사 신축비와 시설개선비로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일부 도비를 지원받으면 예산 부담이 적고 조기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중앙정부의 특목고 억제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특목고 전환에 따른 교사수급 문제, 전교조 반대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전환사업이 불투명하여 시에서는 2008년 정명고 이사장 면담 시 2009년 2월까지 특목고 전환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공립 특목고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정확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음
- 따라서 시의 특목고 유치계획은 공립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되어 오정구 여월택지지구내 고교부지를 매입하여 특목고를 유치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 질의결과 동일 부지에 일반고의 설립계획은 없으며, 특목고 설립 시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인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의 실행계획에 따라 향후 특목고설립 사전협의권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특목고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음

- 2006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필요면적에 4천 평방미터 가량 부족하여 부적합하다고 회신 받은 매입부지를 일반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면적은 11,505㎡로 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고교 설립 적정부지 면적인 15,440㎡보다 3,935㎡ 부족하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외국어 3개과, 24학급(720명 : 학급당 30명)의 건립이 가능하며
 - 일반감정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00.2.28 이후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택지개발지구의 초·중·고의 학교용지는 감정가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임

- 특목고에 속하는 경기예고 부지를 시가 제공했다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지적받은 과거일도 있는데 다시 외국어고 부지를 전액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기예고의 경우 당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8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양여)제1항 제2호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와 공공기관 유치 등의 용도로 양여가 불가 했으나
 - 2008년 12월2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 동법시행령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므로 부지 매입후 경기도 교육청과 합의하고 시의회에서 동의하면, 특목고 유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학교급식에 대하여

-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6월8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는데 시행규칙 제정 등 추진사항이 없는 이유와 추진일정과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
-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현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에 사용하는 예산 외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

(답 변)

-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우리시는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형편 등을 배제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행과 같이 학교교육경비 지원 범위 내에서 결식아동 중식해결에 역점을 두고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는 결식아동 중식지원 및 도 급식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급식을 지원하는 상황이므로 시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정은 향후에 국·도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을 때 시행규칙 제정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금년에 우리시는 결식아동 중식 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32억1천8백만원의 일부인 7억원을 교육경비에서 지원하였으며, 이것과는 별도로 「경기도 급식지원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함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역으로는 우수 축산물 사용 차액지원으로 87개교에 4억4천만 원을, 경기도 G마크농산물 사용 차액지원으로 8개교에 1억7천만원 등 총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음

- 경기도 교육청에서 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100%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 예산을 포함하여 총 56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초·중·고별 소요예산은 붙임 자료와 같음
-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각급 학교로부터 접수한 2010년도 학교 교육경비 신청액이 325억원에 달하나, 시 재정형편상 지원 가능금액은 100억원 내외로서 요청액의 1/3도 수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소요 현황

학교 및 학생수

구 분	학교수 (개교)	학생수 (명)	평균급식단가 (원)	비 고
계	122	136,327		
초등학교	63	61,177	2,000	덕산초 대장분교 포함
중 학교	32	36,973	2,500	
고등학교	27	38,177	2,600	

※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3개교) 제외

무상급식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00% 지원시	60%지원시	50% 지원시	비 고
계	56,528,406	33,917,044	28,264,203	
초등학교	22,023,720	13,214,232	11,011,860	
중 학교	16,637,850	9,982,710	8,318,925	
고등학교	17,866,836	10,720,102	8,933,418	

※ 산출기초

- 초등학교 : 61,177명 × 2,000원 × 180일 = 22,023,720,000원
- 중 학교 : 36,973명 × 2,500원 × 180일 = 16,637,850,000원
- 고등학교 : 38,177명 × 2,600원 × 180일 = 17,866,836,000원

시정질문답변서

<재정경제국>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사업의 실적 및 현황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장·단점은 ?
- 앞으로 집행할 예산은 얼마이며, 추진 못한 사업과 그 이유는 ?
 -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

(답 변)

- 2009년 예산 조기집행 대상액은 1조 140억원이며 대상액의 60%인 6,084억원의 자금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음
- 대상액은 2009년 본예산과 이월예산이 합산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경비성질상 조기집행이 불가한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하였으며 대상액과 목표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한 수치임
- 우리시의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104.8%인 6,375억원을 집행하여 전국 평균인 104.4%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으며 회계별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 회계별 추진실적(6.30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예산액 (A)	목표액 (B)	집 행 액	
			금액 (C)	집행율 (C/B)
총 계	10,140	6,084	6,375	104.8
일반·기타특별	9,344	5,606	5,886	105.0
공 기 업	725	435	441	101.4
기 금	20	12	8	66.7
공 단	51	31	40	129.0

- 조기집행은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재정 지출 확대로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를 지향하고 민간 경제활동 자극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의 가용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경제 악순환이 우려되기도 하였습니지만 우리시에서는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출예산 확보를 통하여 하반기 재정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림
- 2009. 10. 14일 기준으로 한 자금집행은 8,314억원으로 앞으로 집행할 예산은 1,826억원이며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성격상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이월사업 1,051억원과 월별 균등하게 지출이 이루어지는 복지예산 287억원, 민간이전경비 180억원, 기타 경상적경비 등 308억원은 남은 연말까지 최대한 지출토록 하겠음
- 재정 조기집행이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나 분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분기 0.1%, 2/4분기 2.3% 성장하는 등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기관별 추진실적(6.30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예산액 (A)	목표액 (B)	집 행 액	
			금액(C)	집행율(C/B)
총 계	10,140	6,084	6,375	104.8
본청·사업소	8,049	4,829	5,289	109.5
원 미 구	918	551	491	89.1
소 사 구	540	324	278	85.9
오 정 구	582	349	277	79.3
시설관리공단	51	31	40	129.4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부천시에서 각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한 비상발전기 설치 실적과 현재의 가동실태 및 점검횟수, 점검기관, 소요예산, 향후설치 계획, 소요예산은?

(답 변)

- 비상발전기는 정전시 진행중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하여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에 원활한 흐름을 유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임
- 비상발전기 설치 및 가동 주민센터는 심곡2동 주민센터 등 현재 9 개소로, 점검기관에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통하여 비상시 원활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월 평균 1회 점검시 평균 150천 원이 소요됨(관련자료: 별첨)
- 비상발전기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은 대당 2,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비상 가동시 큰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지하실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음
- 비상발전기 설치시에는 별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민센터에는 설치 공간 지하실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휴대용 발전기를 비치하도록 검토하겠음

※ 별첨자료

주민센터 비상발전기 설치 실적 현황

(단위:천원)

구분	주민센터	비상발전기 내역				비상발전기 점검 내역		점검 비용
		발전기 용량	설치업체	소요예산	가동 실태	점검기관	점검 횟수	
원미구	심곡 2 동	75kW	남전사	17,000	비상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월1회	154
	원미 1 동	110kW	대흥전기	18,170	비상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월3회	242
	소사 동	54kW	삼양 일렉트로닉	12,000	비상가동	두승실업	월2회	100
	중 동	69kW	대우발전기	14,000	비상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월1회	106
	상 2 동	85kW	K2 발전기	17,000	비상가동	에이플전기안전	월1회	162
소사구	심곡본 1 동	145	남전사	20,800	비상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월2회	226
	소사본 1 동	105	보국전기	1,800	비상가동	대우전력기술(주)	월2회	150
오정구	원종 1 동	175kW	대승화이텍	16,400	비상가동	건일엠이씨	월1회	132
	고강본 동	104kW	대우발전기	1,320	비상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월2회	100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부천시 관내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하여
 - 부천시 관내 논농사를 경작하는 가구수와 쌀 생산량은 ?
 - 쌀의 소비(판매)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
 - 향후 장기계획으로 삼정동 및 대장동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방안은 ?
 - 부천시에서 직접 자경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및 각종보조금 내역은 ?

(답 변)

- 우리시의 논농사 가구수는 총 640가구, 벼 재배면적 340ha, 쌀 생산량은 약 1,676톤으로 예상됨(2008년 생산량 1,618톤)
- 2010년부터 처음으로 관내 생산 쌀의 소비판매를 위해 고품질 '복사골 으뜸쌀'을 43개 학교에 625톤(시비 422백만원 자부담 985백만원)을 학교급식용으로 연중 공급하여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관내 쌀의 브랜드명을 '복사골 으뜸쌀'로 확정하고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특히 쌀 포장재를 규격별로 제작 지원하여 관내 쌀의 이미지 개선과 판매를 촉진토록 하고 있음
- 삼정동, 대장동지역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며 경지정리가 양호한 집단우량농지 지역으로, 우리시에서도 가급적 이 지역의 농지는 보존하여 자연경관 확보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일조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음
- 관내 자경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및 각종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 쌀 소득보전 직불금 410농가 105백만원(2009년 324농가, 79백만원)
 - 각종 보조금 : 6개사업, 763백만원
 - 못자리용 상토 지원 : 243ha, 14백만원
 - 병해충방제(항공방제) : 연3회, 124백만원
 - 유기질비료 지원 : 600톤, 126백만원
 - 대형농기계 지원 : 5대, 60백만원
 - 복사골 으뜸쌀 포장재 지원 : 30,000매, 17백만원
 - 학교급식용 쌀 공급 : 43개교, 422백만원 등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시설관리공단 투서사건에 대해 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공단에 관리책임을 물어 그 책임자에 문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 이 기회에 공단 관리자를 퇴직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답 변)

- 2009.9.17. 시설관리공단 내부직원으로부터 市 감사실장에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팀장 2명이 관내 A전기공사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또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A전기공사업체의 수천만원의 공사대금 및 자재 대금을 미납 하였다는 내용으로 Fax로 접수되었음
- 市 감사실에서 상기 문서를 2009.9.17.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 감사팀으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 공단 자체 감사팀에서 2009.9.18 ~ 2009.9.29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향응제공은 관련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입증이 어려워 사실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사 및 자재 대금 미지급 건은 조사 결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나, 금액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내 사이버감사실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상시 감사체계수립
둘째, 공단 주요거래업체 대상 윤리경영 실천안내 서신발송 및 설문조사 실시
셋째, 비위 관련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시스템 가동과 함께 윤리경영 관련 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 그리고 공단책임자 문책과 관련하여 중부경찰서 수사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자체감사 결과와 함께 참고하여 엄중한 문책을 실시할 예정임
- 공단 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 제8조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였으나,
- 공단 임원 임명과 관련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2009. 9. 21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을 공개모집하여 시장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또한 상임이사는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명토록 개정됨에 따라 전문 관리자가 보다 많이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질문의원 : 정영태 의원

○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따른 지원방안 등과 관련하여

- 아파트형 공장의 경직적인 면적으로 공장의 확장이나 축소가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은 ?
- 교통체증 완화 및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 버스 제도 도입과 근로자용 휴식 공간, 편의시설 확충, 금융지원시설 유치 등에 따른 대책은 ?
-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간의 근로조건과 복지혜택의 비교가 용이하여 불평과 불만이 쉽게 표출되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남. 이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업배치와 입주방안 강구
- 영세기업을 위한 분양 비용과 이자상환 연장, 관리비 절약 등 재정적 부담 최소화 방안과 공장관리 부서와 인력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 공장의 복지시설, 주차장 확충,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 증설, 공동이용창고 건립, 기업홍보전시관 설치 등 부대시설 확충과 아파트형 공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답 변)

- 아파트형 공장의 확장이나 축소 문제는 축소는 가능하나 확대의 경우 이미 모든 업체가 입주 완료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앞으로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할 시에는 관련부서(건축, 소방, 통신 등)와 협의하여 확장이나 축소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교통체증 완화 및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 버스제' 도입 건은 해당지역은 대중교통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으로 '셔틀버스1)' 노선 운행 대상이 아님. 참고로, 춘의아파트형공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75번, 71번, 70-2번, 50번, 22번, 12번, 11번, 606번, 661번 등 9개 노선이

1)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다니는 버스 (순환버스)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대우아파트형공장은 70-3번, 12-1번, 71번, 11번, 12번, 22번, 23-1번, 8번 등 8개 노선이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테크노파크 1차는 7-1, 2, 3, 5번, 8번, 60번, 50-1번, 11번 등 8개노선이, 테크노파크 2차는 7-1, 2, 3, 4번, 11번, 8번, 50-1번 등 7개 노선이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테크노파크 3차 지역은 8번, 11번, 7-3, 5번, 60번, 50-1번 등 6개 버스노선이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아파트형공장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 편의시설과 금융지원 시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춘의, 대우, 테크노파크 1,2,3차 등은 보육시설, 교육장, 체력 단련실, 휴게시설, 공동회의실 등 휴식공간과 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규모가 작은 아파트형공장은 편의시설과 금융지원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때에는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금융지원 시설의 입주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시에서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음

- 아파트형공장은 제조업, 연구개발업,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가능한 업종을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 다만, 입주업체간 근로조건과 복지혜택은 업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천시취업정보센터'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음
- 부천시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체에게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은행대출금에 대한 2.5%이내 이자보전을 해주는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경기도 운전자금 최고 5억원, 시설투자자금으로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또한,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100%감면과, 재산세 5년간 50%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아파트형공장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단이 되어 자체적으로 공동 시설·지원시설의 유지관리, 공동부담금의 징수,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리비 등 회계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음. 앞으로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등 인력 교육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실시하겠음.

-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확충,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 증설, 공공이용 창고, 기업홍보 전시관 설치 문제는 테크노파크1, 2, 3차, 춘의, 대우 등 대규모 아파트형공장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민영 소규모 아파트형공장은 부대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음

우리시에서는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물론 관내 제조업체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 조례에는 관내 기업체의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선도 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기업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정영태 의원

- 직업소개소 운영실태와 단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무료직업소개소의 확대 운영 계획은 ?
 - 금년도 유료직업소개소의 위법사례 적발 건수와 내용은 ?
 - 유료직업소개소의 위법사례 단속의 문제점과 실효성은 ?
 - 소개요금 관련 법령 등의 개정건의 의향은 ?

(답 변)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직업소개소는 2009.10.14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18개소가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 및 가사도우미 등의 각종 직업소개사업을 각 기관, 단체의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무료직업소개 사업소가 구직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고용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 단체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사후관리 등의 각종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 2009년도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현황

연번	소개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일자	처분
1	태화직업소개소	김○○	상동 402-1	각종 서류 미비치	'09.03.17	경고
2	민음직업소개소	유○○	심곡동 367-12	각종 서류 미비치	'09.03.19	경고
3	가나직업소개소	이○○	송내동 708-5	각종 서류 미비치	'09.09.15	경고
4	(주)삼성홀딩스	송○○	춘의동 122-1	각종 서류 미비치	'09.09.16	경고
5	C S T 리쿠르팅	이○○	송내동 586	각종 서류 미비치 및 게시물 미부착	'09.09.18	경고

- 우리시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2009.10.14 현재 96개소로 분기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적은 단속 인원으로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에 대

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정보수집, 소개업소 동향파악, 민원상담을 통한 특별관리업소 중점 지도단속 및 불시 또는 수시 지도단속 등을 강화하여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 등의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따르면 전문직 또는 모델, 회화지도(E-2) 강사 등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유료직업소개업소에서 구직자의 임금에 소개요금을 포함하여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소개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 및 분기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 질문의원 : 정영태 의원

-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단속반 운영상황 및 위법사례 단속실적은 ?
- 관내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과 위법행위 단속실적 현황은 ?

(답 변)

- 시중에 유통되는 석유제품은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이를 저장·운송·보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확보와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관내 석유판매업소, 오정큰길, 상동호수공원 주변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길거리 판매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10월 현재 46회에 걸쳐 총 154개소 464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주유소 1개소, 불법 길거리 판매소 4개소 및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1명 등 총 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유제품의 정량판매 여부에 대하여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1회에 걸쳐 28개소를 단속하고 정량판매를 위반한 주유소 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음
- 앞으로도 관내에서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정량판매와 적정품질 확보,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공공기관 자동문 설치 관련하여 ?

(답 변)

-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민원인과 장애인이 자동문 설치로 인하여 보다 더 편리하게 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 자동문 설치 사용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잦은 고장사고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자동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원미구청, 오정구청, 중4동, 상3동, 성곡동, 원종1동, 오정동 주민센터 7개소로서, 향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문 설치되지 않은 시청사 및 소사구청, 주민센터 (30개소)의 출입구에 민원인과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 청사 민원실 출입문부터 자동문을 설치하고 각 구청, 동 주민센터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한선재 의원

- 부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대규모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개발이득으로 세외수입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개발이익의 역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공헌하는 긍정적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있음
- 부정적인 측면으로, 택지개발 한계가 있고 GB해제 어려움이 있고, 소사,춘의 역세권 개발도 주택경기침체로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 참여하는 사업 형태로 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가 어렵고 수지타산 의문점 있다.
- 공공기관이 지역내 민간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고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다방면으로 분석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갖고 추진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 변)

- 현재 우리시는 구도심권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을 추진중에 있으며, 뉴타운 3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 28개 지역 62만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뉴타운사업 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소사·춘의역세권)의 복합개발사업과 고강GB지역개발사업,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성골·대장·역곡지역의 GB해제 도시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경영성이 접목된 부천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 2009. 4월 부천시도시개발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7.6~10.3.까지

90일간 부천시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영역으로는 자체 수행사업으로 고강지구 GB해제 개발사업, 뉴타운사업지구내 기반시설, 소사. 춘의 역세권사업, 대행사업으로 부천수목원, 추모공원 사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사가 직접 참여할 경우 향후 9년간 총 2,055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며, 연간 228억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하였음

- 특히, 이러한 막대한 도시개발 이익의 역외유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낙후지역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임
- 또한 경기도내 지방공사는 9개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공사가 3년차에서부터 흑자 경영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내 뉴타운사업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를 공공관리자로 지정,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시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는 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봄
-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주민설명회, 경기도협의, 최종설립심의, 조례제정,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걸쳐 2010. 10월 설립 예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등 의회와 지속적인 교감을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
-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

(답 변)

-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재래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통한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상거래 장소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재래시장 중 법인으로 등록된 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지 못하여 그동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의 취약한 전기설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대상 시장의 범위 등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시 재래시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음

시정질문답변서

<복지문화국>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부천을 대표할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육성계획은 있는지 ?

(답 변)

- 부천은 1973년 시 승격 이래 서울의 위성도시, 베드타운,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업도시 등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실이 지금의 문화도시 부천으로 성장하게 되었음
- 금년 9월에 세계 최초·최대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부천의 현대문화 중심축을 만화에 두고 세계최고의 만화도시로 성장·발전 시켜가면서 현대와 전통의 조화로움을 이끌어 내어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다져가야 할 때라고 생각함
-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함.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이며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 축제가 바로 부천무형문화엑스포임
- 부천의 핵심 브랜드는 무형문화엑스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며 부천을 중심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메카로 육성한다” 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취지문과 같이, 그동안 다져온 현대문화 인프라 위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형문화엑스포를 부천의 브랜드로 키워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정착시키겠음
- 정부에서는 내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국비 20억원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입법부에서도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문화포럼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심화두 또한 무형문화엑스포와 전통

문화의 세계화 방안임

- 우리가 세계최초로 선점한 무형문화엑스포로 국내외 문화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문화 인프라 확장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21세기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인 전통문화를 우리시의 핵심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승동 · 정영태 의원

-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영상문화단지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
- 영상문화단지의 기 설치된 시설과 현 여건을 갖고 시자체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에 의뢰하여 개발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영상문화단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 영상문화단지에는 아인스월드, 판타스틱스튜디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미 들어섰고 서커스상설공연장과 공방거리, 무형문화엑스포 공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부실사업장 정리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임
- 영상문화단지 330,264㎡부지중 이러한 시설물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개발 할 수 있는 유보지는 112,948㎡임. 이곳에 엑스포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만 남아 사실 개발 할 여지가 없는 실정임
- 2006년부터 영상문화단지를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굴지의 우수기업에 개발참여를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하였으나, 지리적인 여건 등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지역으로 인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고, 행정재산으로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만 개발이 가능한 계약조건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용도지역과 행정재산변경을 건의하였으나 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에 영상문화단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음. 영상문화단지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만화, 영상, 전통테마파크 컨셉으로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시설을 제외한 나대지는 무형문화엑스포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애견테마파크 철거부지)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임.

○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2007년부터 타이거월드를 포함한 영상문화단지 일대를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 이어야 하고, 관광단지는 부지면적이 100만㎡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지정 받을 수가 없었음
- 정부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만큼 2010년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부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20%이하 → 30%이하) 방침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음

○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 앞서 개발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성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인스월드, 판타스틱스튜디오, 공방거리, 서커스상설공연장, 그리고 무형문화엑스포공원을 조성하면 개발할 부지가 없음.
- 따라서,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 타이거월드를 잇는 관광벨트에 대하여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전문가 용역발주 시 용역과업에 포함시키겠음

○ 영상문화단지에 기 설치된 시설과 현 여건 하에서는 시 자체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에 의뢰하여 개발용역을 발주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 영상문화단지를 현 시점에서 기 조성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엑스포공원 및 주차장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시 자체로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0년 본예산에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 특히, 용역에는 무형문화엑스포공원을 엑스포기간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외에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평상시에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는 전통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계획이며, 아인스월드와 상동호수공원, 타이거월드까지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용역과업에 담을 계획임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2009년도 엑스포 개최 예산 중 공사중단, 계약포기, 예매권환불, 인건비 등 집행내역은?
- 개인적으로 구입한 예매권은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속적인 예매권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예매권 환불임시창구를 개설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환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 엑스포 자원봉사자 등 행사참여 시민에게 엑스포 취소에 대한 안내문 및 홍보물을 알리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오해와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향후 엑스포 조직위원회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답 변)

- 2009년도 엑스포 개최 예산 중 공사중단, 계약포기, 예매권환불, 인건비 등 집행내역에 대하여
 - 엑스포 총수입액 5,111백만원 중 '09. 10. 13.현재, 집행된 금액은 3,06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9.9%가 집행되었음
 - ※ 엑스포 당초 예산액은 6,000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행사취소로 인하여 총 수입 예산액을 5,111백만원으로 예산변경
 -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조직운영 기본경비 695백만원, 행사장 운영 기본경비 및 입장권 제작비 101백만원, 행사장 기반시설조성 및 환경연출시설물 제작비 1,502백만원, 전시 및 공연, 시연·체험을 위한 경비 345백만원, 엑스포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비 419백만원임
 - 행사취소에 따른 향후 집행예정액은 시설비 및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위탁용역비 등 820백만원으로 총 수입예산액 5,111백만원 대비 75.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3,883백만원 중 행사의 연속성을 위해 수반되는 시설비(2,070,600천원),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914,574천 원) 등 2,985백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손실액은 약 897백만원으로 예상됨

【 총수입 예산현황 】

(2009. 10. 13 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경수입액	구성비	당초수입액	구성비	비교증감	구성비	비고
총 계		5,111,101	100.0	6,000,000	100.0	△ 888,899	100.0	
세 입	보 조 금	4,000,000	78.2	4,000,000	66.6	-	-	
	부 천 시	2,000,000	39.1	2,000,000	33.3	-	-	
	경 기 도	2,000,000	39.1	2,000,000	33.3	-	-	
	자 체 수 입	1,111,101	21.8	2,000,000	33.4	△ 888,899	△ 44.4	
	입 장 수 입	-	-	700,000	11.6	△ 700,000	△ 100	
	회 장 수 입	22,000	0.4	28,915	0.5	△ 6,915	△ 23.9	
	입내및작업수입	200	0.1	70,000	1.2	△ 69,800	△ 99.7	
	협찬및후원수입	486,811	9.5	600,000	10.0	△ 113,189	△ 18.9	
	잡 수 입	11,005	0.2	10,000	0.2	1,005	10.1	
	이 월 금	591,085	11.6	591,085	9.8	-	-	

○ 개인적으로 구입한 예매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불 방안과 「예매권 환불 임시창구」 개설에 대하여

- 「2009 무형문화엑스포」 입장권은 총 406,000매(예매권 325,000매)를 제작하여 7. 7. ~ 9. 17.까지 73일간을 예매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예매처(엑스포 조직위, 부천시, 맥스티켓, 농협중앙회 등)에서 예매권을 판매 하던 중,
-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180)」에 따라 9월 4일 「2009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개최를 부득이 취소 결정함에 따라 9월 4일 자로 예매입장권 판매를 중지하였음
- 예매 기간 중('09. 7. 7 ~ 9. 4) 판매한 엑스포 예매입장권은 총 62,327매에 / 256,341천원으로 티켓 판매대금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환불 기간을 설정(제1차 9. 14 ~ 9. 30. / 제2차 10. 1 ~ 10. 7) 환불을 추진한 바, 10. 7.현재, 252,584천원(98.5%)을 환불하였음

- 10. 7.현재 미 환불된 금액은 3,757천원으로 법률자문결과 “당초의 행사 기간이 종료되어 예매입장권의 유효권리가 없어졌으므로 추가 환불에 대한 당위성은 없다.”라는 답변을 얻은 바,
- 예매권 환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불창구를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불을 신청하지 못한 걱정된 사유 및 구매 과정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환불을 진행할 예정임

○ **엑스포 자원봉사자 등 행사참여자에 취소를 알리지 않아 시민들이 오해와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 2009년 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자원봉사 지원자는 모두 217명으로 지난 9월 4일 엑스포 개최 취소 결정 후, 곧바로 자원봉사 지원자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 9월 9일에 조직위원장 명의의 행사 취소에 따른 안내 및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자원봉사 지원자들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음
- 아울러, 중앙 및 지역신문사 등에 보도 자료를 기 배포하였고,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취소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각 구 및 동 주민센터에도 각종 기회 교육 및 회의 시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향후 엑스포 조직위원회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대하여**

- 2010년 1월에 집행위원장 등 집행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정비·개편하고, 향후 집행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련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국제행사로 승인된 내년도 엑스포의 위상을 고려하여 엑스포 사무국의 대외적인 지위를 격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사무국 상근인력은 현재의 인력규모 (40명 - 파견공무원 25, 전문계약직 15)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내년도 보조금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환경연출분야 등 전문직 1 ~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 내년도 엑스포 개최 이후 차기 엑스포 준비는 사무국의 파견공무원을 점차 줄이고 전문직이 행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행사 관련 집행되는 3,883백만원 중 행사 연속성을 위해 수반되는 시설비 (2,071백만원),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914백만원) 등 2,985백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손실액은 897백만원으로 예상됨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소사구 심곡본동 567-1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매입을 추진할 용의는?
- 이미 확보된 펄백기념관과 공원 등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 표고에 저촉되어 건축 불가 지역은 자연공원을 조성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시민들의 쉼터와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답 변)

○ 심곡본동 567-1번지 일원 지가 상승 전 매입에 대하여

- 2007년 제140회 정례회의시 심곡본동 567-1번지등 10필지 구 부천수영장부지 일원 21,215.7㎡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취득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목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향후 대체취득사유 발생시 추진하겠음

○ 펄백기념관과 공원 등에 대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 펄백기념관 공원 및 주변 이용 가능한 면적에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1936년 심곡본동 펄백기념관 주변일대에 제약공장을 설립하여 후학양성과 사회봉사 활동으로 부천을 빛낸 유일한 선생을 기리는 문화시설 건립 등과 함께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 건축 불가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조성 방문객과 시민의 쉼터와 주차장으로 조성에 대하여

- 표고에 저촉 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 및 시민쉼터와 주차장등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류재구 · 김관수 의원

-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 도덕적 해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기에 문화재단 정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고 있으니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해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답 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 해임 요구안에 대하여는 현재 상임이사를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음
- 따라서 사실여부에 대한 사법적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 조사결과와 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문화재단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음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오정대공원의 공연장에서 공연한 자료 제출과 공연의 음향과 무대장치로 사용된 금액의 자료 제출 공연장을 야외음악당으로 구체적 계획은?

(답 변)

○ 오정대공원에서 공연한 자료는 2009년 9월 4일부터 3일간 찾아가는 작은 무대 열린공연 등을 6회 공연했으며 공연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 시	주관단체	행 사 명	공 연 내 용	비고
2009. 9. 4 19:30-21:00	한국예총 부천시부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	합창, 한국무용, 변사극, 국악, 가요	
2009. 9. 5 19:30-21:00	한국예총 부천시부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	풍물, 현대무용, 창극, 합창	
2009. 9. 6 19:30-21:00	한국예총 부천시부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	색소폰 연주, 선소리 타령, 밸리댄스, 가요	
2009. 9. 11 19:30-21:00	한국예총 부천시부	2009. 주말 상설극장	대북, 한구무용, 비보이 공연 가요	
2009. 9. 12 19:30-21:00	한국예총 부천시부	2009. 주말 상설극장	풍물, 뮤지컬 갈라쇼, 비보이 변사극	
2009. 9. 13 19:30-21:00	한국예총 부천시부	2009. 주말 상설극장	색소폰연주, 한국무용, 가요, 밸리댄스	

○ 공연의 음향과 무대장치로 사용된 금액은 총 11,900천원이며, 상세 내역으로는 무대 1식 2,200천원, 조명 3,000천원(6일), 음향 3,000천원(6일), 발전차 2,700천원(6일), 의자(300개) 800천원, 텐트 200천원임

○ 오정대공원에 설치된 무대는 당초 길이 9.8m, 폭 4m, 높이 0.5m 규모로써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대리석으로 건립되어 공연예술행사를 할 수 없어, 오정구 건설과에서 길이 17m, 폭 10m, 높이 1.0m의 규모로 확장공사 진행중이며, 소요 예산액은 이동식 음향기기를 포함하여 99,592천원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그 동안 소외 되었던 오정구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갈증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함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 단속인원 확충을 위한 조치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신고단을 만든 후 선신고 후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 검토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카드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통하는 센서 설치 후 '주차가능' 카드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경고음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방안 강구

(답 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완벽한 단속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장애인 주차장 단속에 「시민 신고단」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하여
 -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주차단속요원 15명을 대형쇼핑센터, 종합병원 등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 각 장애인단체 회원 등을 통하여 수시로 신고토록 하고 있음
 - 향후 통장 등 일반 시민들을 활용한 「시민 신고단」 구성·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주차카드와 전용 주차장과 통하는 센서 설치에 대하여
 - 「센서 설치」 방안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안 및 기재사항으로 발급되고 있음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전국에 있는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으로, 우리시에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설치시 센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겠음

-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요원 확대를 통한 단속 강화, 시민 홍보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부천시에 거주하는 성 범죄자가 있는지 ?
만약에 있다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답 변)

○ 부천시에 거주하는 성 범죄자 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 부천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중부경찰서 8명, 남부경찰서 3명이며, 거주지 관할 지구대에서 신변 확인 및 지속적인 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부천 보호관찰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강명령, 사회봉사,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착용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 참고로 부천시 성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하여

- 우리시는 4개소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편성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3,500만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편성 관내 초·중·고 125개교 중 53개교(전체학교대비 40%)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 향후에는 「청소년 성문화 센터」를 유치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박종국 의원

-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관련하여 7월 9일 피관 개막기념 행사 소음을 측정한 결과 71~73dB로 규제기준을 초과 하였는바, 야외음악당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현장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측정치는 일부 허위이므로,
-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은 향후 예술회관 신축 시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논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 변)

- 야외 음악당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시 현장소음을 측정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측정치 일부가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시민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문화시설로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필수 시설이나,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로 야외음악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용역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음실측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소음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임
 - 현재와 같이 방음장치 없는 지상 공연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떠나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임
 - 무대를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여 실제상황을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측정이었으나 불가하므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가상측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결과는 위치에 따라 39.7dB 내지 55dB로 상당한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야외음악당의 소음문제로 특설무대 설치되는 비용이 연간 약 3~4억 원 소요되며, 10년이 넘는 소음피해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신축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향후 예술회관 신축시 반영에 대하여
 -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복합 문화시설(문예회관) 부지 내에는 별도의 야외음악당 신축 계획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 조식(05:00~08:00, 18:00~22:00) 70이하, 주간(08:00~18:00) 80이하, 심야(22:00~05:00) 60이하

□ 질문의원 : 한선재 의원

○ 부천시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계획과 매년 지원되는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격년마다 증액 지원할 의향 ?
- 금년부터 지원된 난방비 지원은 평가인증 시설여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시설규모별로 지원할 의향 ?
-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비 지원 의향 ?

(답 변)

○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계획과 보육시설 환경 개선비의 격년마다 증액 지원에 대하여

- 셋째아 출생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보육료 일부(월 100천원)를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에 연 300천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평가인증 참여 여부에 따라 연 800~1,000천원을 격년으로 지원할 계획임

○ 난방비 지원을 평가 인증 시설여부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시설규모별로 지원 방안에 대하여

- 정부지원 시설과 정부미지원 시설간의 보육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미지원 시설에 평가인증 참여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연 250~50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0년부터 시설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 규모 및 평가인증 참여 여부에 따라 250~600천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임

○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비 지원에 대하여

- 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식과 능력을 계발하고, 시설간 정보 교류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 본예산에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임

시정질문답변서

<도시환경국>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부천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 무분별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제기 현황 및 시에서 처리한 조치실적은 ?
- 토지·건물 보상예상 금액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 향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수 및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
- 역곡동 84번지 민원의 해결을 위한 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

(답 변)

○ 먼저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민원제기 현황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도시의 기능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미래지향성, 합리성을 중시하되, 필요한 경우 장래의 수요와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발생된 민원제기 현황은 총 15건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피해발생 민원보다는 대부분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요구와 보상 등 조기집행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요구민원 건은 전액 보상조치 하는 등 대부분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공성에 위배되는 상당부분은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건물 보상 예상금액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4개 시설로서 도로 120개소, 주차장 34개소, 공원·녹지 31개소, 기타 29개소 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약 3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 부분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는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시설도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불합리한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시부터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향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상 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구획정리사업에 의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시가화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우리시의 세입·세출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시에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이외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수요 및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치의 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역곡동 84번지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뉴타운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부족한 가로망의 확보와 도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체 도로망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부천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운영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역곡동 84번지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시에서 수립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은 일률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와 각종 제약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도로확장 예정부지에 저촉되는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만 일부 제한을 두는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민원인들에게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제한에 따른 일부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그 대책으로 당초 계획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수립중에 있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더 구체적인 도로망 확장계획을 재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음

□ 질문의원 : 신석철 의원

- 오정대공원과 중앙공원의 하루이용주민의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오정대공원 확장계획은 ?

(답 변)

- 오정대공원과 중앙공원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회전을 등을 감안할 때 1일 총 이용인원은 중앙공원은 4,500명, 오정대공원은 1,500명의 통계치로 추정하고 있음
- 오정대공원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1단계로 49,400㎡이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2단계로 49,800㎡를 2010년부터 공원계획 입안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으로 결정해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공원 내 설치된 분수대가 가동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
- 앞으로 가동되지 않은 분수대에 대하여는 시민편익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은 ?

(답 변)

- 우리시에는 나무, 꽃, 물, 빛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분수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44개 공원에 49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노후 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금년도에는 분수대 49개 중 25개만 가동하였고 나머지 가동되지 않은 24개 중에는 대형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의 과중, 노후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동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분수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 가동 여부를 파악한 후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가동하고, 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원 개선공사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야외헬스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 및 편익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금년도에 공원 개선공사로 실시하는 계남근린공원, 송내 어린이공원에 있는 분수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수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오정구 구간의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의 환경피해가 지속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권리가 무너지고 있어,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따른 부천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경인고속도로 통과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 유발로 오정구 지역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먼저 현재 진행중인 경인고속도로 내동 주변 명보빌라 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 주변 명보빌라 지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2.2.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방음대책 시행관련 주민 승소 재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불복하여 2002.3.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7.6.15일 대법원으로부터 주민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2009. 8. 4일 방음대책을 최종 합의하고, 2009.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방음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난 제100회, 제115회, 제1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소음·진동 및 분진피해 지역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해결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1차적으로 2003년 11월 4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29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을 실시한바 있음
- 그 결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22개 지점의 소음측정이 주간 61.6~84.7dB(A), 야간 61.3~83.3dB(A)로 교통소음한도기준[주간 : 68dB(A), 야간 58dB(A)]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방음벽 높이 증가, 중앙분리대 방음벽 신설 및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등의 복합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시하여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시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이 먼저 존재했고, 건축물 및 주거지가 나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소음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전 구간에 방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보빌라 건과 동일하게 오랜 기간동안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 생활환경 피해사항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문서발송 요청하였으며,
- 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림

□ 질문의원 : 박종국 의원

- 중앙공원 조깅트랙 외곽에 공해저감 및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공기정화 식물인 헤데라를 식재할 용의는 ?
- 중앙공원 조깅트랙은 수명이 다하였으므로 교체할 용의는 ?

(답 변)

- 중앙공원의 조깅로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도와 연결됨에 따라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분진 등 많은 공해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2008년도에 중앙공원 조깅로 주변에 생육상황 및 공기정화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헤데라를 시범적으로 식재하였으며, 2010년에 도로변 수벽 조성시 공해저감식물인 헤데라 등 사철 푸른나무로 수벽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정차와 노점상방지 및 시민의 건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중앙공원 내 조깅트랙은 훼손이 심한 상태로 우천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우리시에서는 도로변 자동차 매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벽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깅트랙을 정비코자 2010년 본예산에 10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고 내마모성,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재 포장코자 할 계획임

□ 질문의원 : 송원기 의원

-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설립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피해대책위 및 부천시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 사업승인기관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은 ?

(답 변)

- GS파워(주)의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께서 대기환경오염을 우려, 반대 입장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과 입장을 같이하여 GS파워(주)에 2호기 발전시설 건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부천시장 서안문을 1, 2차에 걸쳐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 전달하여 우리시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그간 관계요로에 우리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 증설이 무산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와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발전소 증설관련 추진사항 1부.

발전소 증설관련 추진사항

일 시	추진사항	비고
'08.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09. 4. 21	부천시 시장님 서안문 전달	지식경제부, 환경부
'09. 4. 28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발전면허 심의 승인	GS파워(주)
'09. 3월~6월	주민설명회(1회), 공청회(2회) 주민반발로 무산	
'09. 8. 27	환경영향 본평가서 협의요청	GS파워(주) → 지식경제부, 환경부
'09. 9. 9	부천시 증설반대 서안문 전달	지식경제부,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9. 9. 11	환경영향 본평가서 협의요청	지식경제부 → 환경부
'09. 9. 18	증설반대 주민집회 (150명)	GS파워(주) 부천사업소, 부천시청 앞
'09. 9. 23	주민 탄원서(9,000명) 제출 및 장관면담 요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9. 9. 23 ~ 현재	GS파워 부천사업소 앞 주민집회중	GS파워(주) 부천사업소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공원 내 식재된 소나무 또는 잣나무 송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하여 금년도에 제기된 민원 건수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차량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은 ?

(답 변)

- 공원 울타리 주변 도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임에도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공원 내 식재된 소나무 또는 잣나무 송진 및 각종 수목의 진딧물 등으로 인한 차량피해가 무지개공원, 소망공원 등에서 전화민원이 있어,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나무 상태에 따라 가지를 전지하거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등 조치하였음
- 앞으로도, 식재된 나무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시기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활동제한에 대하여

- 지난 8월, 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겸직규정을 적용하여 시의원이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 하기 때문에 신규 위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음
- 시 집행부가 근거 삼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임
-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가 공공단체에 속한다고 치더라도, 동 협의회에 무슨 시설이나 재산이 있으며, 100명 정도의 구성원 중 한 명인 협의회 위원을 어떤 근거로 양수인 또는 관리인으로 판단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람
- 이번 사태에의 경위와 전말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시고 잘못된 조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시기 바람.

(답 변)

- 우리시에서는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여,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 또한, 동 협의회는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 및 지방의회 관계관 실무교육 교재(행정안전부, 2009.5.22)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공공단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함.”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2009. 7. 20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의원이 협의회장 및 위원 겸직관련 질의를 하게 되었고, 2009. 8. 4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 “부천시장은 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부천시의회 의원이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으로 통보 받은바 있음
- 재차, 지방의원 겸직 관련 행정안전부 담당자(박대순)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동 협의회는 부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이며, 지방의원은 해당 공공단체의 운영 및 결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인이 될 수 없어, 부천시의회 의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겸직이 금지” 된다고 하였음
- 이에, 2009. 8. 20 제4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시 협의회 위원 중 부천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원님께서 그동안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셨고, 그 결과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사료됨
차후에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당부 드립니다

붙임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관련 질의회신 공문(행정안전부) 사본 1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부천시장(환경보전과장)
(경유)

제목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관련 질의 회신

1. 부천시 환경보전과-12692('09.7.20)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귀 시에서 우리부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보조되는 단체의 회장과 위원으로 겸직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부천시로부터 전액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 부천시의회 의원이 회장 및 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단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협의회는 부천시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인 푸른부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해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5조 및 제16조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부천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천시장은 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부천시의회 의원이 협의회 의 회장 및 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무관

박대순

행정사무관 노경달

선거의회과장

08/04

최명규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1966 (20090804.)

접수 환경보전과-13662 (2009.08.05.)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층 1406호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871

전송 (02)2100-4317

/ds7326@mopas.go.kr

/ 공개(1,2,3,4,5,

시정질문답변서

<건설교통국>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편리한 교통축이면서도 도시는 양분되어 길 건너 호수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산책로이자 운동장이면서 남의집 같기만 함.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건너편과의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왔고 본 의원도 2006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없고 국토해양부와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의 불발로 해결의 길은 요원하기만 함
- 호수공원과 아파트단지 사이의 하부공간에 약 50m 내지 100m의 광폭횡단보도를 만들고 차량이 다니는 양쪽에 요철블록으로 처리하여 차량이 서행하도록 강제한다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광장처럼 횡단할 수 있을 것임
- 시장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양분된 도시 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본 제안을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답 변)

-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한 양분된 도시기능의 회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행동선 연결방안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의 일부를 활용해야 하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배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동선 연결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 부천시 방범 CCTV 관련하여 ?

(답 변)

○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해결 대책은 ?

- 부천시의 방범용 CCTV는 2006년도에 51개소, 2007년도에 10개소, 2008년도에 52개소를 설치하여 총 11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신규분 95개소를 설치 중에 있는바 당초 2006년도 51개소와 2007년도 10개소의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종합상황실과 각 파출소 지구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8년도 52대를 구축하면서 KT유선망을 사용하여 113대를 산정할 경우 연간 189,840천원의 막대한 통신료를 줄이고 방범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통정보센터의 ITS교통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무선망으로 구축하였음
- 부천시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진적으로 무선설비를 시공하여 유선사용료를 절감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간 장애(건축물, 구조물 등) 발생시와 심한 비바람에 의한 안테나의 일시적 기능 저하시 정상화면 송·수신에 일부 영향을 받고 있으나 10. 9일 현재 113개소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제품의 기술은 시간대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민안전을 보장키 위한 범죄예방용 카메라인 만큼 철저하고 정밀한 검사와 관리로 항상 최적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였음

○ CCTV 유지관리 보수 대책은 ?

-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장비의 노후화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검증은 물론 노후된 서버 등을 교체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기기의 불량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책임 수리되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가겠음

○ CCTV 관제실 교통정보센터 내에 설치에 따른 운영 방법 등 개선 대책은 ?

- 기존 경찰서 종합상황실 및 각 파출소 지구대에 있던 상황실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에 없던 교통정보센터 상황실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며
-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방범용CCTV의 시설수를 감안할 때 현 장소의 협소함은 문제가 되므로 향후 2층 증축 또는 신축을 검토하고 있음

○ 48개소의 CCTV가 관제센터에서 보이지 않아 모니터링 안 됨

- 기존의 유선망을 무선망으로 모두 바꾸었으나 그동안 최적의 시스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을 해 나가는 중에 있었으며 현재는 모두 복구가 되어 화면이 정상으로 출력되고 있음

○ 비상벨의 90%가 작동이 안 됨

- 고장 나고 작동이 불량한 외부기기에 대해서는 일괄 전수 조사하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기기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비를 투입 보수 조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중인 기기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서 책임보수토록 조치하겠음

○ 금년 95대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검토와 연구 분석 후 계획을 다시 수립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설치된 113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을 제안함

- 기 구축된 113대의 방범용CCTV의 시스템 부분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기기의 업그레이드와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나갈 것이며,
- 2009년도 95개소 시설계획 제품은 방범용으로 전국에서 사용되는 41만화소 사양품목 중 가장 최신사양을 선택 하였으며 화질보강과 야간투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향후에 시공업자 선정방식은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방법을 연구 모색 할 것임

○ 저가로 하청을 주어 시공토록 함으로서 결국 부실한 사업이 되었음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한 (주)이지전기통신, 발안정보통신, (주)조은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적법하게 승인한 것인지 상세한 근거 자료는 ?

-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발주한 CCTV설치와 113대 무선설비의 설치 사업은 (주)건호정보통신과 화산텔레콤에서 수주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음. 2006년, 2007년 방범용 CCTV설치 사업도 하도급을 신청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음

○ 2008년도(주)건호정보통신과 화산텔레콤(주)에서 수주 구축한 50대의 CCTV와 113대의 무선망 구축사업 준공이후 하자보수나 AS한 실적이 있다면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전혀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기기들이 고장 나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

- 하자보수 및 AS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음

○ 또한 113대의 방범CCTV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2006년부터 구축한 방범용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관리한 실적과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의 주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

- 우리시와 남부·중부경찰서간 체결한 “생활안전용 CCTV운영협약서”에 의거 운영은 경찰, 유지보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주체임

- 재난안전관리과가 방법용 CCTV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사업시행과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통신직1명과 전산직 공무원1명이 반드시 필요함. 부천시 공무원 정원조정을 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통신직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어떠한지 ?
 - 계속 증가되는 방법용 CCTV시설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조직검토를 하겠음
- 무선방식을 채택한 자치단체는 부천시가 유일한 것 같다. 안정적으로 방법 CCTV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선방식이 아닌 유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보고 안양시에서는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불안정한 무선 방식을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람
 - 무선망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통신비(대당 년1,680천원)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 ITS망이 구축되었기 분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고 무선시스템 불안에 대해서는 노후된 기기의 성능보장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망을 이용한 자가망 구축은 보안규정에 위배되어 불가함
- 올해 8월 발주한 95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비디오서버가 기존의 설비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함. 기존의 설비와 호환이 되지 않는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람
 - 시설 시기가 다른 기기간의 호환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음
- 올해 센타메트릭스 시스템을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는데 기존의 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함
 - 메트릭스 시스템은 방법용 CCTV의 영상자료를 교통정보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하여 교통정보수집, 주정차단속카메라와 연계하여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잔여 102대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이 필요함

- 현재의 부천시 방범 관제센터는 교통정보센터 한쪽에 마련되어 있어 비좁고 협소하다. 또한 CCTV화면을 모니터 한다는 것은 보안이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교통정보센터 주차장 부지에 2층 철골조 건물물을 지어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독립적인 방범 CCTV관제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을 바람
 - 현재의 교통정보센터의 방범관제센터는 ITS교통정보망과 함께 사용 (교통, 주정차, 방범) 되고 있기에 면적이 협소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설될 CCTV모니터 관제실로서 기능을 위해 의원님의 의견대로 현 교통정보센터 주차장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 방범 CCTV 95대 설치사업 발주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자 타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관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언제, 어느 곳을 다녀왔는지 와 복명서 일체를 제출바람
 -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좋은 점은 반영시키고자 그동안 4차에 걸쳐 업무담당자와 관련팀장 과장이 인근 안양시, 군포시, 화성시 인천계양구 등지를 다녀왔음. 자료와 복명서는 별도 제출하겠음
- 부천 방범 관제실에서 CCTV화면이 16분할로 나오는데 그 중 하나를 모니터 화면 전체로 확대하면 영상이 깨져 선명하지 못하다. 이는 카메라, 비디오 서버, 무선통신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 일부 CCTV카메라에서 화면확대시 영상의 파손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디오서버에서 영상을 소형으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카메라의 정밀조사 및 비디오서버를 교체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임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 차량번호 인식CCTV 시스템에는 레이저방식과 루프방식이 있는데 부천경찰서에서도 루프방식을 건의했다는데 굳이 차량번호 인식률이 떨어지는 레이저방식을 부천시에서만 채택을 했는지 잘못추진 발주된 사업도 즉시 중지 취소시키고 인식률이 높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

(답 변)

○ 부천경찰서에서 우리시 담당부서에 루프방식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공문이나 공식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며, 레이저식과 루프식은 서로간의 장단점이 있으나 경기도 인근시의 대부분이 레이저 방식으로 결정된 곳이 많고 우리시에서는 결선 등 장애요인이 많은 루프식보다는 레이저식 방식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기 채택을 하게 된 것임

인식방법	장 점	단 점	비 고 (채택시군)
레이저식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낮고 장애발생율이 현저히 낮음	검지율이 루프식보다 1-2% 낮음	하남,동두천,성남,고양,용인,안산,의정부,시흥,광주,이천,구리,양주,포천,양평,연천,과천,의왕,부천
루프식	검지율 98%로 검지율이 가장 높음	도로절개 후 매설하는 방식으로 혹한기 또는 중차량 이동에 따라 단선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보수가 빈번히 발생 장애대처시 또는 도로 재포장시 도로를 통제하고 작업	수원,안양,남양주,화성,가평,안성,과주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동남우회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수대로가 조기 개통된다면 차량의 분산으로 완화되리라 생각되지만 범박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계수대로 개통이 늦어지는 관계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수대로가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제 보상이 마무리 되어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면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동남우회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도록 임시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

- 우리시 동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추진중인 계수대로 2단계 공사(2009.09~2010.12)는 현재, 편입용지 보상이 완료되어 가옥철거를 시작으로 2010.12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계수대로 2단계 사업구간은 지형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고, 범박로와 교차하는 곳에는 교량 건설계획이 있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우회도로 교통완화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은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나, 추후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 시흥시계부터 범박로까지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을 완화 하겠으며, 또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조기개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소사~원시간 국철사업 지연 및 향후 계획은?

소사~원시간 국철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연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답 변)

-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2009년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이레일(주)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협상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대로 2009년 12월에 기공식 계획이 있으며, 아울러 우리시는 국토해양부 및 사업시행자(이레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서강진 · 한선재 · 류중혁 의원

- 자율방범대 일부 초소에 대한 한전의 단전 조치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부천시는 한전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량기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

-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는 2000. 6월 민간기동대와 주민자율방범대가 통합되어 현재 경찰서 관할을 중심으로 2개의 연합대(남부, 중부 자율방범연합대)와 37개 동 자율방범대로 구성되어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봉사 단체임
- 무단전기 사용하는 자율방범대 초소의 경우 신규 계량기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금번 한전의 전기사용 실태 조사 결과 무단전기사용 15개소가 적발되어 단전조치 및 전기료(위약금) 8천9백만원을 통보받은 상태임
- 단전 조치된 15개 초소의 신규 계량기 설치 건은 한전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 계량기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음.
- 무단전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위약금)에 대하여는 부시장, 양 경찰서 담당 과장과 한전 부천지점장과의 협의를 있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구도심 쓰레기 (전단지, 불법간판 등) 문제에 관하여 ?

(답 변)

-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는 차량 등을 이용한 집중적 살포와 교묘한 방법으로 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단지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희망근로, 공공근로자를 지역별로 배치하여 지속적 수거와 정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단속해 나가겠음
-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은 단속을 피해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별로 현장 상주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금년 3월부터 9월말까지의 단속실적으로는 현수막 27,181건, 입간판 2,251건, 에어라이트 1,356건, 전단지 226,124장을 수거하였으며, 상습적·반복적인 광고물 60건에 9,51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부천역 남부광장 국도변 지하도 입구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동,서 인도로 확장해야 하고 국도변에서 U턴해야 하는 진·출입을 남초등학교 쪽에서 대각선으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

(답 변)

- 부천역 남부광장에 인접한 경인국도변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광장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지하도 출입구 케노피의 규모가 폭 3.5m 길이 8.5m이고 이전할 구간의 보도폭은 약 4m로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 보도의 너비가 3m 이상 확보 되도록 하고 있어,
- 현재의 경인국도 보도폭으로는 이설이 불가능하고 현재보다 보도폭이 약 2.5m를 더 확보해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남초등학교 방향에서 대각선 광장방향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 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광장조성 계획 수립시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현재의 교차로 계획을 최적의 안으로 결정 조성하였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도 출입구 이전과 교통체계 개선 문제는 당장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부천역 남부광장 인접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시 광장 주변 시설과 교통체계 개선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광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견인보관소에 대하여 ?

- 견인보관소에 대한 임시사용의 기준과 2,000여 세대의 대단지 입주라는 예고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
- 제7호 공영주차장은 중동신도시 개발당시 계획된 공영주차장으로써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는 이유는 ?
-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이전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고 계속하여 답변 하는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과 계획은 없는 것인지 ?
-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하여는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7호 주차장이 견인의 접근성과 효율성으로 민간견인업체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근거리 견인에 꼭 필요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는 것인지 또는 못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이전계획은 ?

○ 불법 주·정차 단속과 민간위탁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

-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견인업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차량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민간위탁에 견인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
-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른 아침 05시부터 늦은 21시까지 견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
- 토·일요일 및 공휴일까지도 단속 및 견인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
- 단속공무원이 PDA를 이용하여 견인업체에 정보까지 제공하여 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
- 현재 우리시에 보유중인 견인차량 7대면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차량대수 비해서 적은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 부천시 재정을 살펴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

(답 변)

- 견인보관소 운영에 있어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제7호 주차장을 계속 임시보관소로 사용하는 이유는 ?

- 견인차량보관소는 중동111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초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처음 2004년도에 견인보관소를 사용시에는 주변의 건물이 많지 않았으나 워브더스테이트 건물에 입주할 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음
- 견인차량보관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으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던 중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완화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이전 계획이 중지되었고 하부공간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옮기는 것으로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2008년 불용처리 되었음
-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한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의 조치가 진행중에 있어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사용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

-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견인차량보관소의 부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나 그 곳으로 옮기기 이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로서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7호 주차장이 견인의 접근성과 효율성으로 이전을 안 하는 것인지와 앞으로의 이전 계획은 ?

-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문제는 민간업체의 수익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 부지가 확보되면 조속히 이전 할 계획임

○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시는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

-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은 7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부정주차 조치, 1대는 방치차량

조치, 2대는 새벽시간대 민원처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경기도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조사한 바 수원시 30개소 3,462면, 성남시 62개소 2,669면이고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그에 비해 우리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248개소 5,532면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견인차량의 사용빈도가 높은 실정으로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 계약자의 권익 보호 및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민원처리를 위해 투입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는 민간업체에 상당부분 위탁할 수밖에 없음

○ 아침 5시부터 늦은 21시까지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까지 견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

-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후반기부터 노면청소차량이 매일 5시부터 운행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여 추진해왔음
- 토·일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은 민원처리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5개조 10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단축하고 교통소통 장애지역, 곡각지점, 민원 발생지역만 집중 단속하고 있는 형편임

○ 단속공무원이 견인업체에 정보까지 제공하여 단속과 동시에 견인해야 하는 이유는 ?

-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 후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견인업체에서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견인업체에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량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보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 특정지역만 집중 견인된다는 형평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 부천시 전지역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음

○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

-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업무 민간위탁 계약체결이 2009.6.25부터 2011.5.31일까지 2년간 체결된 상태로서 계약기간 동안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약이 끝나는 2011년에 민간위탁과 직영과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음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차량을 계약주차로 배정시 집의 위치와 주차구역의 거리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 블록화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서 낮에 주차가 만차가 되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답 변)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일정 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5,532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확보하여 운영중임
- 이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장애인 546명에게 우선적으로 주소지와 인접한 지역에 배정하고 있으며,
- 또한, 블록화거주자주차지역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표기하는 사항은 잦은 계약변동의 요인으로 별도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표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기』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간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나가겠음
- 참고로,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1면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은 2~4%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표기하여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질문의원 : 변채옥 · 윤병국 의원

- 제 153회에 지적했던 불법광고물 간판에 대한 조치사항과 결과는 ?
 - 불법 광고물과 불법 간판이 없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주시고 단속 전후를 비교하여 단속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람. (변채옥의원)
- 송내역 광장 노점상 단속 및 불법 노점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점상인 당사자와의 대화등 합리적인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변채옥의원, 윤병국의원)
- 구두 수선소등은 버스정류장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장 이동이 가능한 매점이나 구두수선소가 몇군데 있는지 조사바라며, 장기적으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는 ? (윤병국의원)
-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 (변채옥의원)
- 상동신도시 무지개 고가 사거리 인근 교통체증에 대하여 ? (변채옥의원)
 - 상동신도시 무지개고가 사거리 인근에 5개의 웨딩홀부페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심지어 세이브존 건물에는 웨딩홀이 두군데나 입점해 있음. 예식이 몰리는 주말에는 세이브존에서 웨딩홀로 가기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넘쳐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 중동 GS백화점 주변 등 불법 유해광고물의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중·상동 상업지역을 불법 광고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정례회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난 6월 4일, 6월 19일, 7월 3일에 집중단속을 하였고, 9월 11일에는 문화시민운동과 연계하여 도시미관과 전직원과 민간단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동 상업지역의 세이브존, 홈플러스, 고려호텔 주변 지역의 불법
광고물 232건, 노점상 20건, 노상 적치물 138건을 일제정비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 및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선정성 유해광고물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음

○ 송내역 광장 노점상 단속 및 노점상인과의 대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가장 고질적인 노점상이며, 시민불만이 가장 많은 송내
역사 앞 꼬치구이 노점상 점거공간을 회복한 후 소규모 공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당초 10월 13일자 공무원, 경찰, 용역원 합동으로 일
제정비 계획하였으나, 노점상 단체의 극렬저항이 예상되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10월
8일 새벽시간대 도시미관과 남자 전직원과 덤프차량 5대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토사를 적치하였음
- 적치된 토사에는 잔디 및 수목을 식재할 예정이며, 이미 조경 설계
를 완료하였음.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시민의 쉼
터공간으로 조성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흙이 쌓여있는 돌레에서 다시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
하여는 노점상단속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용역인력 30명으로 주·야
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십수년간에 걸쳐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반복하였으나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고, 또다시 노점상의 영
업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따라서 일시적인 조치로는
노점상을 근절할 수 없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때 정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하여 노점상 허가제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노점상 정비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임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람

○ 구두 수선소등 이동이 가능한 것을 조사하고 보행자 통행 편의증진 방향으로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매표소 및 구두 수선소는 142개소(버스매표소:66개 구두 수선소:76개)가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그중 버스정류장과 접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매표소 및 구두수선소는 20개소(버스매표소:12개 구두수선소:8개)가 있으며, 이들 20개소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조치 하겠음

○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문화시민운동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문화시민운동은 의식개혁운동으로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준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자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가입 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낮은 수준 때문이기도 함. 이러한 시민의식을 높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운동이 문화 시민운동이며,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 운동을 4대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문화시민운동은 성숙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으로서 의식 전환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시민운동 교육』 등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식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불법현장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미래에 이 사회를 책임 질 새싹들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역전담제에 의한 상시 단속과 『문화시민 3無운동』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의식개혁 운동은 정신적인 운동으로서 그 특성상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양성중인 『문화시민운동 시민강사』를 활용하여 지속·반복적인 교육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나부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살기 좋은 도시는 안전한 도시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하며, 문화시민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상동신도시 무지개고가 사거리 인근 웨딩홀 주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

- 상2, 3동 상가지역에 5개의 웨딩홀 뷔페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요즘 결혼 시즌으로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찾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주말 결혼식 시간대인 오전 11:00부터 오후 3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 2명을 배치하여 주정차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관할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교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외곽순환고속도로 상2동, 상3동 구역 하부공간을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 트럭, 컨테이너 운반차량 SK에너지의 유류차량, 폐기물운반차량 까지 주차되어 있음
- 대형차량 및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무단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은 ?

(답 변)

-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3.2km구간의 현 지목은 도로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장애재활복지회 외 장애인단체 및 상이군경회에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장애재활복지단 대표에 대하여는 무단점유 및 시설물파괴로 08. 3. 6일 , 08. 8. 1일2회 고발조치 하였음
- 2009 .9. 10일 하부공간에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차량 84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9대 행정처분, 65대를 해당시군에 이첩처리 하였으며, 불법주차한 자가용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에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웬스정비 등을 협조요청 하겠음
- SK에너지 유류차량 2대가 주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차하지 아니하고 있음
- 향후 하부공간에 무단 주차중인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부천터미널 (주) 소풍과 관련하여

- 현재 부천시가 부천터미널 소풍측과 벌이는 소송현황과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 5월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즉 관계인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임. 구체적인 소송배경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인 부천시와 피고인 소풍측이 약정관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천시에 불리한 이행각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이행보증금 미납에 따른 법적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총액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부천터미널 소풍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해 이미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 지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인 엄청난 소송비가 낭비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부천시가 패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시 부천시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 변)

-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터미널(주) 소풍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천터미널(주)는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에 의거 우리시에 이행보증금 총124억원 중 미납금 109억원에 대해 성실한 납부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10월 5일 자신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던 부천터미널의 상가를 모두 한국자산신탁(주)에 담보신탁 하였음에 따라 채권자인 우리시를 해하는 행위이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금(이행보증금) 109억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까지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7일 채권가압류 결정, 2009년 4월 30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09년 5월 15일 본안(약정금 등)소송 접수 및 증명, 2009년 8월 13일 1차 변론(속행), 2009년 9월 7일 가처분결정 취소, 2009년 9월 10일 2차 변론(속행), 2009년 10월 15일 3차 변론이 추진되고 있음
- 2009년 9월 7일 법원으로부터 부천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채권가압류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임
- 법적소송을 위해 교통정보센터에 총1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 담보공탁금 등 현재까지 약 1억2천8백만원(기획예산과 예산포함)이 지출되었음
- 지하보행통로의 사업시기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완공시(2010년)까지로 되어 있어 지하보행로 연결시점(2010년 12월 준공예정)과 건축물 완료시점(2007년 8월)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안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던 사항으로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판단됨
- 다만, 부천터미널(주)에서 이행보증금을 미납함에 따라 법적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안(약정금 등)소송 추진시 우리시가 승

소할 경우 피고(부천터미널(주)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였음

- 부천터미널(주)의 이행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본안(약정금 등)소송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문에 “부천터미널(주)가 부천시에 미납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10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시되어 법원에서도 이행보증금 109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향후 본안(약정금 등)소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서울지하철7호선 공사구간중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까치울 사거리 방향 공사구간중 도로구간의 보행통로를 종합운동장 놀이공원 쪽으로 우회하여 설치하였는 바, 야간에 통행이 불편하고 어두워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도로에 다른 구간처럼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에 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지하철7호선 702공구 종합운동장사거리 인근 보행통로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터널공사 관통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우회 보행자 통로를 도로방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박종국 의원

- 부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청 주변 보행자도로를 재 포장할 의향은 있는지 ?

(답 변)

- 시청에서 현대백화점까지 보행자도로 구간의 연장은 총 419m, 폭 10m로서 현재 노면 상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량하여 금년 5월중에 일부 손상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보수 조치한 바 있으며,
- 또한 우리시에서는 위 보행자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2008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 1,463백만원을 반영하여 보도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단계적으로 시청에서 GS 백화점 주변 보행자도로 1,366m 구간에 대하여도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임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부천터미널 (주) 소풍의 미납금과 관련하여
 - 소풍의 미납금 109억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와 함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9월4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금지 해지판결이 결정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 이는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소풍측의 이행각서가 본 의원이 제153회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에서 이행각서 제9조와 제11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경우 109억원에 대한 이행여부 및 대책은 ?

(답 변)

-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터미널(주) 소풍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천터미널(주)는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에 의거 우리시에 이행보증금 총 124억원 중 미납금 109억원에 대해 성실한 납부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10월 5일 자신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던 부천터미널의 상가를 모두 한국자산신탁(주)에 담보신탁 함에 따라 채권자인 우리시는 2009년 4월 17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 2009년 9월 7일 법원에서 부천터미널(주)와 한국자산신탁(주)와의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바 있음
- 그러나, 부천터미널(주)의 이행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본안(약정금 등)소송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문에 “부천터미널(주)가 부천시에 미납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10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시되어 법원에서도 이행보증금 109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향후 본안(약정금 등)소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153회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에서 지적하신 이행각서의 제9조 및 제11조의 내용은 2009년 8월 13일 1차 변론, 2009년 9월 10일 2차 변론시, 법원의 가처분취소 결정문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는 없음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우물길 인근지역(심곡3동 320-357, 중동778-790)은 1999.9월~2004.4월 까지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운영해오다가 이용률이 저조하여 무료개방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곳은 현재에도 양편이 이중 주차할 정도로 복잡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 계남고와 부천중학교 간에 있는 산우물로 주변 노상주차장을 설치 못한 이유?
- 동지역(중2동주민센터) 주변에는 24시간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

(답 변)

- 산우물길 노상주차장(길이400m, 67면)은, 2004년도 2명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1개월 평균 운영수입(관리원 1인당 34만원)은 물론, 1일평균 10대미만의 주차수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무료개방중임,
-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산우물길 주차장 주변상가는 대부분 카센터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당시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주차면 밖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 제151회 시의회 시정질문시 노상주차장으로 추가 지정 요구가 있어, 관할지역인 중2동 3통, 8통 거주민의 의견을 확인중에, 총 905세대중 76%(685세대)가 『노상주차장 반대의 집단민원서류를 2009.06.17자로 접수』하였고, 또한 관할 주민센터에도 추진반대의 문서가 접수되어 부득이 추진을 보류한 사항으로, 향후 동지역에 대한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대다수가 원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 그리고, 동지역(중2동 주민센터) 주변의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시정질문답변서

<맑은물청소사업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시민들이 화장실을 가야하는데 건물마다 잠겨있어 사정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 화장실 개방에 대한 현실화 요청
- 차량을 가지고 주유한 다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허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용품 지원은 낭비라고 생각하며
- 지금이라도 화장실 현실화를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화장실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추진중이며('09. 10. 1 현재 : 1,200개소) 1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10년에 DB 구축하여 전산관리하고자 하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건물주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연차별로 개방하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건물주나 사업주에게는 화장실내 소모용품의 일부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 개방화장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로변 등에 위치한 주유소로 총 25개소이며 주유를 안 하더라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음
- 아직도 대다수의 건물주는 화장실 개방을 꺼리고 있으며 민간시설의 경우 화장실 개방에 참여하다가도 시민들이 깨끗이 사용하지 않으면 폐쇄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 개방화장실의 확충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들의 공공적인 마인드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음

- 우리시에서는 2010년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한선재 의원

○ 소사배수지를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의향은?

(답 변)

- 소사2배수지는 소사구민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을 저장하는 중요한 수도시설로서 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의 청결을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 우리시는 체육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수도시설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수지를 개방하여 왔음
- 소사2배수지를 인조잔디로 조성할 시에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인 천연잔디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인 친환경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먹는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는 최대한 친환경 시설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배수지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이 금지된 시설이므로 시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참고사항: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등에관한규칙” 제2조

- ①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 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 ② 수도시설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시정질문답변서

<뉴타운개발사업단>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50만이상 대도시에 뉴타운사업 관련 권한이 이양되면 부천시 뉴타운과 관련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기존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지정의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
- 도정법 개정으로 영업보상이 3월에서 4월로 증가하면 세입자 보호측면에서는 좋으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 촉진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의 사전점검, 교육 등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
-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 총회 시 서면동의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로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니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천시 대안은 무엇인지 ?
- 사업구역이 협소하거나 용적률이 적어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한 사업성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답 변)

- 50만이상 대도시에 뉴타운사업의 권한이양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2009. 9. 16일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토록 입법예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정고시 된 촉진계획의 큰 틀의 변경은 어려우며 사업시행 상 불합리한 부분 등 촉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위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임

또한, 용적률 등의 변경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촉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용산 문제로 인해 세입자 이주대책 강화차원에서 정비사업의 영업보상 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세입자등의 권리는 강화된 반면 사업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일부분 상승 요인이 있으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업성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조합과 세입자 간의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9년 5월27일 개정공포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의2의 규정은 손실보상기준인 4개월 보다 추가로 세입자 이주대책비 지급·영업보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용적률의 25%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우리시는 용적률 완화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2010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본 제도가 시행되면 세입자 및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 간 갈등, 법적분쟁 등으로 촉진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촉진사업 업무추진과정에서 주민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처리지침, 업무기준 등을 수시로 제시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법적분쟁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조합운영 사

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법적절차가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무료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촉진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맞춤형 설명회를 구역 주민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시장과 추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건의사항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고 있음

- 다음은 주민총회 등에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 서면 동의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공정성 등이 훼손되어 이에 따른 주민갈등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서면결의 대신 IT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사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임

- 소사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제공을 통해 완화 받는 부분을 추가하여 결정된 용적률로서 소사지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의 평균 용적률은 245%로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밀집으로 타 지역에 비해 토지 등 소유자 수 대비 계획세대수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당 평균 평형보다 계획 세대수의 평균 평형이 크게 증가된 경우로서 세대수 조정은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건축설계 경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용적률상향 등이 가능 한 사항임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가칭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가칭 단계에서의 업체도움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간의 갈등 및 추진위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

(답 변)

- 가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단계로 법에서 규정한 단체는 아님. 가칭 단계의 역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되는 조직임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작성, 운영규정작성 및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서징구 등의 준비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임의 단체이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 할 경우에는 해산되어야 하는 사적단체임

따라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경우 사적인 행위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업체 등의 공정한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 및 추진위원회의 불신임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지원을 사전에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음

- 이와 같은 가칭 추진위원회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조합설립이 장기적으로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등의 절감방안을 지침에 반영하여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정영태 의원

-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중 부천시에서 해제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얼마인지 ?
- 고강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순환재개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첨단의료종합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대한 계획은 ?

(답 변)

-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도심인근의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면적은 56.270km² 로서, 추가해제 가능물량은 32.269km² 임

다만,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물량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시·군별 물량이 아닌 경기도 권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시가 속한 서남부권역(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의 경우 10.2km²~15.3km² 이내의 추가해제 물량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우리시는 고강지구 인근의 고강·원종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약 480,000m²를 추가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2008. 12월 경기도에 기건의한 바 있으며,

- 또한, 고강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고강아파트 등 2,500세대 주민이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책을 수립코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 부천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는 오정구 고강동, 원종동 인근 일원 480,000㎡로 인천 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등과 인접하고 교통적으로 사통팔달의 요충지인 지리적 장점을 살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서비스산업을 목적으로 중증환자와 성형·이미용 등의 첨단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의료관련 관계자들의 국제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현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지구내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26일 우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음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오정대로 북측의 오정·대장동 일원에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약 1,300,000㎡의 개발제한구역에 27홀 규모의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을 계획하여 의료관련 시설과 연계함으로서, 상호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오정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임

- 우리시가 오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본 사업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의원 : 한선재 의원

-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부천시가 참여한 비율은 얼마입니까 ?
-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건설 하였습니까 ?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득금은 총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현재 재산(현금, 부동산)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 1990. 6. 30일부터 1994. 12. 31일까지 총 2조4천9억원 (부천시 9천137억원, 주택공사 9천852억원, 토지공사 5천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5,452,000㎡(1,649,000평)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41,435호 수용인구 165,740명 계획으로 신시가지를 조성 하였으며,
 - 부천시가 참여한 비율은 33.6%로, 면적 1,836,000㎡(555,000평) 주택공급 14,000호(수용인구 56,000명) 임
- 중동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도시기반시설은
 - 사업비 3천436억원을 투입하여 작동~서울 신정동간 도로 외 6개 노선 개설과 복사골문화센터 및 삼성복지회관 건립과 부천테크노파크(1단계)를 연면적 182,387㎡(55,172평), 334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음
 - 자세한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득금 및 지금까지 사용처와 현재 재산 잔액에 대하여는
 -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00. 10. 31일 폐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종합결산 현황은 수입 1조4천565억원 지출 1조4천347억원으로 이월잔액이 218억원이며, 미 매각 토지는 137필지 211,369㎡(63,939평)로 당시 평가액으로 4천48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음
 - 현재까지 미 매각 토지는 11필지 8,087㎡(2,446평)로 2009년 공시지가로 307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불가하여 답변 드리지 못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도시기반시설 건설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계			3,436	
도로개설	작동~서울신정동 도로개설	L= 1,940m B= 25~30m	310	
	국도 39호선 연결교량 건설	L= 1,575m B= 50m	354	
	송내역~경인국도 연결 지하차도 개설	L= 715m B= 30~50m	333	
	내촌로 도로개설	L= 760m B= 25m	248	
	옥산로 도로개설	L= 1,740m B= 25m	115	
	도약로 도로개설	L= 910m B= 15m	72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	L= 430m B= 25m	127	
소 계			1,559	
문화복지회관	복사골 문화센터 건립	연면적 : 31,097㎡	491	
	삼정 복지회관 건립	연면적 : 4,232㎡	52	
소 계			543	
아파트형공장	부천 테크노파크 건립	연면적 : 182,387㎡ 입주 업체수 :334	1,334	

시정질문답변서

<부천시보건소>

□ 질문의원 : 한상호 의원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부천시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실시 사항은?
 - 현재까지 예방접종 실적은?
 -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보유 현황 및 향후 구입 계획은?
 - 현재까지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 어르신 동절기 독감 예방 대책에 대하여?
 - 거동불편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노인정방문 실시 계획은 ?
 - 예방접종에 한분도 빠짐없이 실시할 계획 있는지?
 - 중증 거동 불편시민을 전화로 신청 받아 가정방문 예방접종 실시 의향은?
 - 보건소의 각종 예방접종에 대해 현재까지 홍보실적을 제출하기 바람.

(답 변)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부천시 종합대책 수립 및 실시 사항은 ?
 - 부천시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을 위하여 2009. 7. 22일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 상향에 따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음.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 2009. 9. 29 일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 자문위원 및 시·교육기관·의료계·집단시설 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및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부터 2010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 예정이며 세부방침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우선접종대상은 의료인 및 전염병 대응요원, 임신부·영유아·노인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및 군인 등이며,
 - 접종방법은 보건소 단체접종 (초·중·고 124개교 136,913명) 및 민간의료기관 위탁 (임신부 및 영유아 등)으로 실시 계획임
- 백신은 전량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 책정은 없음

○ 어르신 동절기 독감 예방 대책에 대하여 ?

-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우선 권장접종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안전접종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나 병원 방문자이외에 기관방문 등 접종을 억제하고 있음
다만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동주민센터를 순회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금년은 11월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인해 계절 독감은 10월 12일부터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보건소 인력을 총력동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예진 의사 협조를 받아 추진 중에 있음
 - 예방접종은 안전접종이 가장 중요하며 경로당의 경우 303개소로 접종인력 등 여건상 경로당 방문이 어려우며,
 - 금년 계절 독감 백신은 국가적으로 30%가 생산 감소되어 2008년 보다 5,181명이 감소한 49,700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가급적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주치의의 진료 후 접종토록 권고하고 있음
- 최근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상자가 몸이 앓좋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접종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음
- 보건소는 각종 예방접종 홍보를 위하여
 - 영유아 출생아 및 예방접종누락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 계절독감 접종 대상자 문자전송 및 현수막 게시, 버스 전광판 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 기타 복사골 시정소식지 게재, 홈페이지게시, 보건소 소식지 제작,
학교 및 산업체 등 관련기관에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였음

○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선접종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신종플루 대책에 관하여

- 아직도 예방기구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예방시설을 완비할 것인지 ?
- 지금 공급하거나 설치된 예방기구가 상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신종플루 환자 현황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

(답 변)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예비비 28백만원, 부천시 예비비 81백만원을 지원하여 집단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손세정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특히 민원의 이용이 많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에 손 소독기를 구입 설치토록 하였음
- 신종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물품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등 물품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 소독기 등 예방기구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적정장소 설치, 손 소독 안내문 부착, 정기적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음
-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지침이 2009. 8. 21일 변경되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외의 사례는 확진검사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며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이 자택에서 투약하면서 가벼운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었음에도 누적된 사례를 환자라는 편견을 일으킨다는 사회적 손실과 문제점이 있어 환자 현황은 9월 22일 이후 “확진환자” 대신에 “검사 양성사례”로 표시하고 있고, 현재 국가적으로 확진환자수를 집계하지 않으며 다

만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를 발표하고 있음

- 항바이러스제는 국가비축물품으로 보건소를 통하여 거점병원 및 거점 약국에 배분하여 의사의 처방 하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투약현황은 당초 보건소를 경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였으나 9월 21일 부터는 거점병원 및 약국에서 투약전산망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보고하고 있음
- 신종인플루엔자는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항바이러스제의 적시투여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의료계, 교육계, 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의 지원 및 시민에게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감염대책을 적극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현재 방역소독기는 연막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연무용으로 쓰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내구연한 및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 사용 시 안전상 문제점은?
- 중앙공원 소사대공원에 포충기 설치 검토

(답 변)

- 동 새마을 방역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막용 방역기를 연무용으로 사용 시 문제점 및 내구연한 지난 기기의 사용에 따른 안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 연막용 소독기를 연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출력이 모자라서 시동이 자주 꺼지거나 약제 분사량이 적어 소독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연막용 소독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써 대부분 사용연한이 지났고 작업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무용 소독기로 교체 지급할 계획에 있음
- 공원 포충기 설치에 대하여는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실시 정책 제안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현재 30% 지원수준을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전액 국가부담 100%로 확대 실시

(답 변)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09년 3월부터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접종료를 국가 및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임
- 영유아 접종 8종에 대하여 접종료의 약 30%수준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수준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09년 시비 부담 예산은 25%인 162백만원임
- 우리시에서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100% 확대시 약 145,125명에 대하여 3,116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533백만원 (국비 267, 도비 133, 시비 133) 외에 2,583백만원의 시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전염병을 퇴치시킬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시정질문답변서

<감사실>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는 2년에 1회 이상 구·동을 비롯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및 일상 감사를 하고 있고
-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설 명절과 하계휴가 기간, 추석 명절을 전후한 정례적인 감찰과 평상시 기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 그동안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전국 최고의 신뢰와 정도를 지향하는 공직사회 실현에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와 민원 취약분야의 특별감사,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깨끗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란 사명감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장용운 오정구청장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재직시 직무연관성 복지시설 투자관련 지역 언론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

(답 변)

- 공무원의 영리금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 특정한 공무원이 영리업무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의 능률에 저해되는 실제 관여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부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전 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의 가족이 초창기에는 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체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